

광주지방법원 2023. 8. 9 선고 2022나6142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3. 8. 9 선고 2022나61426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2가단50829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 주식회사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재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

변론종결 2023. 7. 12.

판결선고 2023. 8. 9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. 7. 8. 선고 2022가단508290 판결

주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9. 2. 18. 접수 제21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0. 9. 28.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5쪽 15행의 “원고에 대하여”를 “피고에 대하여”로, 6쪽 11행의 “원고에 대하여”를 “피고에 대하여”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5쪽 16행의 “타당하다.”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.

『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피고의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2554호 전부명령이 2020. 2. 14. 제3채무자인 G에 송달되었는바, 위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액은 779,901,369원[= 6억 원(= 차용금 7억 원 - 소외 회사의 2018. 11. 15.자 변제액 1억 원) + (6억 원 × 연 24% × 456일/365일)]이고, 위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644,947,071원이 변제되었으므로, 잔존 채무액은 원금 134,954,298원(= 779,901,369원 - 644,947,071원)이 된다.

그 후 피고의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2560호 전부명령이 2020. 2. 20. 제3채무자인 G에 송달되었는바, 위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액은

135,486,720원[= 134,954,298원 + (134,954,298원 × 연 24% × 6일/365일)]이고, 위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중 55,419,179원¹⁾이 변제되었으므로, 잔존 채무액은 원금 80,067,541원(= 135,486,720원 - 55,419,179원)이 된다.

위와 같이 2020. 2. 20.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원금 80,067,541원 잔존하고 있으므로, 원고 A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.』

3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미주, 판사 김연경, 판사 남수진

별지

1) 청구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